

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안내

1. 설치목적
2.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
3. 기업애로과제에 대한 처리절차
4. 개선권고 추진현황
5. '98년중 추진한 규제완화 주요사례
6. 기업애로과제 신고안내

- 위원회사무국(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)
- 인터넷(www.mocie.go.kr ⇒ “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”)
- 기업애로신고센터(대한상의, 중소기업, 무역협회, 전경련, 중진공, 경총)

1. 설치목적

- 다수법령이 관련되어 있어 개별법의 개정으로는 규제완화가 어렵거나, 기업애로사항 중 규제완화 추진이 시급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「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정('93. 6월)
- 동 법에 의거하여 '93. 8월 발족한 「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)」는 개별기업·업종의 창업 및 생산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들을 중점 발굴,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완화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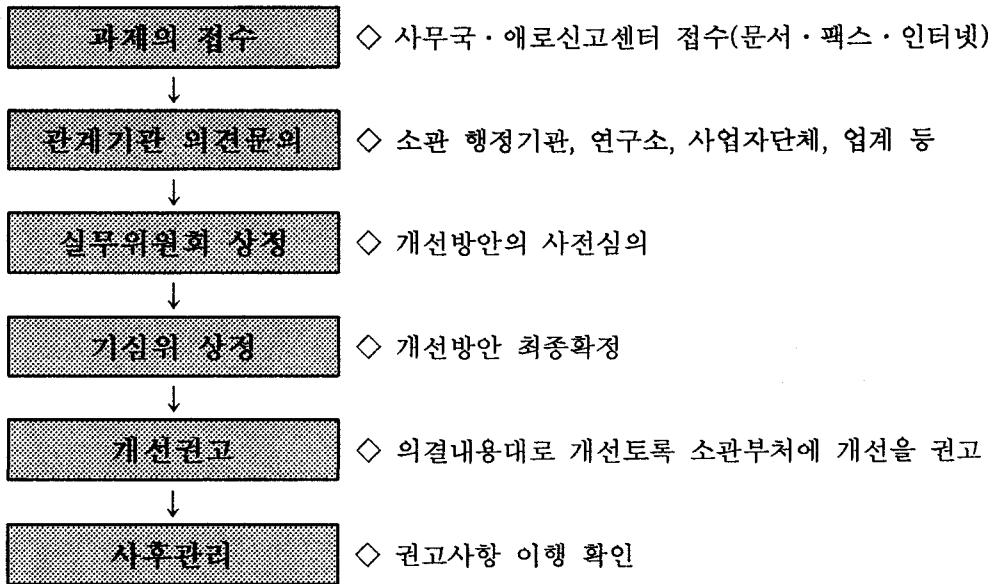
2.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

- 기 능
 -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
 -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
 - 기업활동 관련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권고
- 구 성
 - 위원회 : 위원장(梁承斗 연세대 교수) 1명, 민간위원 7명, 정부위원 4명
 -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(이하 '실무위원회') : 광범위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모
 - ※ 위원장(산자부 기획관리실장) 1명, 민간위원 8명, 정부위원 9명
 - 사무국 : 위원회 업무보좌(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)
 - 기업애로신고센터 : 기업현장의 애로실태 조사·파악 및 애로과제 접수·신고 등을 담당(6개기관)
 - ※ 6개기관 : 대한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무역협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중소기업진흥공단, 경영자총연합회

3. 기업애로과제에 대한 처리절차

- 기업 등으로부터 사무국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에 제안 또는 신고된 기업애로과제에 대하여는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토록 관계부처에 권고
 - ※ 개선권고 :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한 후,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(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1조)

< 과제처리 흐름도 >



4. 개선권고 추진현황

- 위원회는 '93. 8월 발족된 이후 총 16차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, 그간 3,000여건의 기업애로 신고과제를 접수·처리하였음
- 특히, 그 동안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총 812건에 이르는 바,
- 이 중 706여건이 개선완료 되었으며, 나머지 사항은 「'98 규제정비계획」의 추진에 따라 '99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

< 연도별 개선권고 추진상황 >

연 도		'93	'94	'95	'96	'97	'98	계
위원회개최 (회)		1	2	2	4	4	3	16
권 고 (건)		32	149	211	137	202	81	812
개선 추진상황	완 료	32	147	211	136	155	25	706
	추 진 중	-	2	-	1	47	56	106

5. '98년중 추진한 규제완화 주요사례

- 가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단축
 - 가전제품 등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되 중소기업형제품, 계절상품, 핵심부품 등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정경제원 고시 제96-3호)을 개정토록 재정경제부에 권고
-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검사제도 개선
 -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자체안전관리가 양호한 경우 압력용기 및 압력용기에 부착된 안전밸브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고, 보일러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완화하되 개방검사는 4년에 1회씩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·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등의 개정을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에 권고
-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·심사제도 개선
 -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(환경부)·산업안전보건법령(노동부)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 및 유해성조사제도와 관련, 심사기간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수출용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면제토록 할 것을 환경부 및 노동부에 권고
- 광산용기계의 중복검사 완화
 - 광산구내에서 가동하는 광산기계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검사로 일원화하되, 광산보안법령의 검사항목을 보완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
-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
 - 대규모 빌딩관리업체의 직원도 자격이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을 폐지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권고
- 국·고유지 무상귀속 범위의 합리화
 -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기능의 대체여부에 관계없이 종래의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권고

-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개선
 - 자원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등에 의거 시행중인 윤회율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부과와 관련, 회수율이 일정 수준(90%수준) 이상에 도달한 품목은 예치금 부과를 면제하는 졸업제도를 도입하도록 환경부에 권고
- 산업단지의 사후 환경영향조사기간 단축
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시행중인 산업단지의 사후 환경영향조사기간을,
 - (1) 사업착공연도부터 공사완료연도까지는 현행대로 매년 실시하되, 공사완료후에는 공장의 입주율이 70%를 넘는 다음 해에 1회 실시토록 개선(단, 5차년도에는 입주율이 70%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)하고,
 - (2) 사후 환경영향조사제도 자체의 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중·장기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

6. 기업애로과제 신고안내

- 제안방법 : 문서, 팩스 또는 인터넷(※ 과제제안양식 참고)
- 신고처
 - 사무국
 - 주 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(정부과천청사)
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
 - 전 화 : (02)500-2714/5
 - 팩 스 : (02)500-2716
 - 인터넷 : 산업자원부 홈페이지(www.mocie.go.kr)내 “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”
 - 기업애로신고센터

구 분	대한상의	중소기업 중앙회	무역협회	전 경 련	중소기업 진흥공단	경 총
부 서	경제조사실	조사처	무역조사부	규제개혁팀	조사연구처	법제팀
전 화	316-3482	785-0010	551-5204	3771-0219	769-6616	3270-7326
팩 스	754-5785	786-8319	551-5237	3771-0145	769-6630	706-1059

< 과제 제안양식 >

건 명		
제 안 자	(소속)	(전화)
	(성명)	(주소)
근거법령 (상세히)		
현 황		
문 제 점		
제안자의 개선방안		
비 고		